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및 상한 확대 등〉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026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및 상한 확대 등	2

I. 제안경위

2026년 1월 14일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 충남, 강원 등지로 밀려들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력화되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을 타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려는 경우 민간업체들이 처리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반입협력금은 발생지처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및 제5조의3제2항, 제64조).

Ⅲ. 검토의견

1.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및 상한 확대 등

개정안은 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리 방식도 포함되도록 하고, ② 반입협력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및 제5조의3제2항, 제64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후단 신	② ----- ----- ----- ----- ----- ----- ----- -----

현행	개정안
<u>설></u>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생략) ②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 8. (생략) 8의2. (생략) 8의3. (생략) 9. (생략)	-----. 이 경우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64조(벌칙) ----- ----- ----- -----. 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자 2. ~ 9.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9의2. (현행 제8호의2와 같음) 9의3. (현행 제8호의3와 같음)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¹⁾ 및 반입협력금 제도²⁾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발생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하되,

생활폐기물이 발생지 외에서 처리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2022. 12. 27. 「폐기물관리법」 개정(2024. 12. 28. 시행)을 통하여 도입되었음.

1)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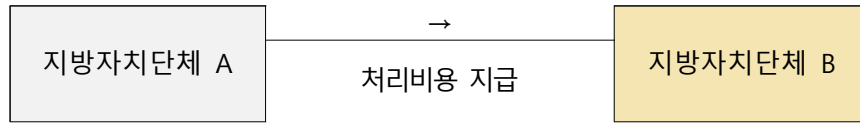
②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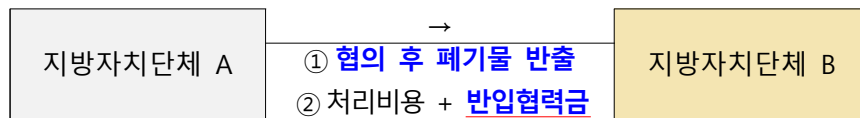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선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발생지 처리 원칙 및 반입협력금 시행 전·후 비교 】

▣ (시행 전) 지방자치단체 A 생활폐기물 → 지방자치단체 B 공공처리시설로 반출



▣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 A 생활폐기물 → 지방자치단체 B 공공처리시설로 반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구체적으로 반입협력금은 공공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 및 음식물 폐기물을 대상³⁾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한액⁴⁾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을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3호에 따른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2. 별표 4 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반입협력금의 징수)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운영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금액이하를 말한다.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2조(반입협력금 금액) 반입협력금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반입협력금 징수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한다.

1. 소각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25,000원으로 한다.
2. 매립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10,000원으로 한다.

징수함.

한편, 생활폐기물 주체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처리는 2021년 1,095만톤에서 2023년 1,040만톤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민간 위탁처리가 2021년 576만톤에서 2023년 623만톤으로 증가하고 있음.

【 생활폐기물 주체별 처리현황 】

(단위: 만톤)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공공	자가	위탁	공공	자가	위탁	공공	자가	위탁
총 계	1,095	4	576	1,060	5	611	1,040	6	623
매 립	247	-	1	211	-	1	177	-	1
소 각	440	-	61	428	-	67	434	-	64
재활용	401	4	510	408	5	540	421	6	552
기 타	7	-	4	13	-	3	8	-	6

자료: 국가통계포털-“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_생활폐기물” 재구성

또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업체를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반출되어 처리되는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6년 1월~2월 두 달간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47만 9,000톤인데, 이 중 공공처리는 84.5%(40만 4,400톤), 민간처리는 15.5%(7만 4,200톤)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민간처리 물량 중 1만 600톤(14.2%)은 충청권에 소재한 업체로 반출되어 처리되었음.

3.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15,000원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충청권 4개 시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공동 대응⁵⁾에 나서는 등 민간 위탁처리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의 민간 위탁·재활용 처리 시에도 지방자치단체 간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반입협력금 가중 부과 및 무단 반입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민간 경로를 통한 변칙적 역외 반출을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발생지 처리 원칙’의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특히, 안 제5조의2제2항 후단⁶⁾ 신설은 현행법상 의미가 중복될 소지⁷⁾가 있지만, 현행법상 민간 위탁을 통한 역외 반출이 사각지대로 이

5)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충청권,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공동 대응 강화”, 2026. 1. 27.

- 공동 대응 방안: ① 쓰레기 유입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② 불법·편법 반입 의심 처리업체 공동 점검 및 단속 협력, ③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 가동

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026)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7)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무가 해당 사무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포괄적 의무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공공처리 또는 민간 위탁 등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발생지 처리 원칙의 적용

용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이며, 개정안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5조의3 제1항의 부과 대상을 법률로 직접 규정할 필요⁸⁾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단체인 한국폐기물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첫째, 안 제5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민간 대행 처리는 현행 규정으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⁹⁾되므로 추가 개정의 실익이 낮고,

현행법 제14조제3항¹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행 계약 없이 독자적으로 폐지·고철 등을 수집·재활용하는 주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처리 권한 및 책무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까지 발생지 처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둘째, 안 제5조의3제2항과 관련하여, 현행 반입협력금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별(소각·매립·음식물류 폐기물) 설치비 및 운영비 단가와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임.

8) 현행법 제5조의3제1항은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폐기물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법 시행규칙은 이를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로 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대로 민간 위탁 처리 물량까지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에 위임된 ‘부과 대상 폐기물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상향하여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9)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이 현행법 시행규칙상 ‘공공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는 하위 법령 개정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10)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반입협력금을 5배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함께 종량제 봉투의 가격인상이 우려¹¹⁾됨.

셋째, 안 제64조제1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의무는 행정기관 간의 준수사항이며, 이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업체의 의무가 아닌 사항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①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성 확보 및 지역 갈등 완화 필요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및 법령 체계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48

11)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전라남도 해남군·완도군)에서는 재정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함.